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  
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2.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대학
5.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
6.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7. 「한국농수산물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대학
8.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